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22호 2014. 06. 27. (금)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고 시

- 삼척시고시 제2014-84호 도로명주소 부여 개별 고시 _____ 2
- 삼척시고시 제2014-85호 도로명주소 폐지 개별 고시 _____ 3
- 삼척시고시 제2014-86호 2014년 해변 지정고시 _____ 4

공 고

- 삼척시공고 제2014-414호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_____ 6
- 삼척시공고 제2014-418호 삼척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_____ 72
- 삼척시공고 제2014-423호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 _____ 79

| | | | | | | | | | |
|---|--|--|--|--|--|--|--|--|--|
| 공 | | | | | | | | | |
|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고시 제2014-84호

도로명주소 부여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우리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개별 고시합니다.

2014. 06. 27.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 | | 비고 |
|----|------------------|---------------------------|----------|-------|----------|--|----|
| | | 주소(새주소) | 고시일 | 부여 사유 | 고시일 | 부여 사유 | |
| 1 | 강원도삼척시 신기면신기리 17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강원남부로 3078-812 | 20140627 | 건물신축 | 20090626 | 38번 국도 연결구간으로 강원도내 도로구간의 위치를 고려한 명칭 활용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570-394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06.27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삼척시고시 제2014-85호

도로명주소 폐지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 건물
 멸실 등에 따른 폐지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6. 27.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폐지:

| 순 번 | 폐지 도로명주소 | 폐지일자 | 폐지사유 | 비고 |
|--------|----------------------------|----------|-------|----|
| 1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원동로 347-149 | 20140627 | 건물 철거 | |
| 2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787-122 | 20140627 | 건물 철거 | |
| 3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731 | 20140627 | 건물 철거 | |
| 4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하장길 62-11 | 20140627 | 건물 철거 | |
| 5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2길 39 | 20140627 | 건물 철거 | |
| 6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81-8 | 20140627 | 건물 철거 | |
| 7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길 390 | 20140627 | 건물 철거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570-394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등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2014년 해변 지정고시

삼척시고시 제2014 - 86호

강원도 삼척시에서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해변의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삼척시장

가. 해변 지정내역

| 관리 등급 | 명칭 | 소재지 | 백사장 조건 | | | 비고 |
|--------------------|------|---------------------|-----------|----------|----------|----|
| | | | 길이 (m) | 폭 (m) | 관리 상태 | |
| 계 | 15개소 | | 5,940 | | 양호 | |
| 시범 (2개) | 삼척 | 삼척시 갈전동 14-7 | 1,200 | 90 | " | |
| | 맹방 |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 740 | 80 | " | |
| 일반 (11개) | 중산 | 삼척시 중산동 30-20 | 250 | 35 | " | |
| | 작은후진 | 삼척시 교동 379-6 | 150 | 20 | " | |
| | 한재밀 |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66-3 | 400 | 40 | " | |
| | 상맹방 |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66-12 | 400 | 40 | " | |
| | 하맹방 |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1 | 400 | 50 | " | |
| | 덕산 |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83-6 | 500 | 50 | " | |
| | 용화 |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14-5 | 500 | 50 | " | |
| | 장호 |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91 | 300 | 40 | " | |
| | 원평 |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85-1 | 400 | 30 | " | |
| | 문암 | 삼척시 근덕면 초록리 257-1 | 200 | 30 | " | |
| | 임원 |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399-29 | 150 | 15 | " | |
| 마을 [간이] (2개) | 오분 | 삼척시 오분동 24 | 200 | 20 | " | |
| | 부남 |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산102-1 | 300 | 30 | " | |

나. 해변 개장기간 및 시간

| 관리 등급 | 명 칭 | 개장 기간 | | 개장 시간 | 구역내 야영가능여부 | 비 고 (군부규정) |
|-------------------|-------|-------|-------------|-------------|---------------|---------------|
| | | 부터 | 까지 | | | |
| 시범 (2) | 삼 척 | 7. 12 | 8. 18 | 06:00~24:00 | 야영가능 | "가"급 |
| | 맹 방 | 7. 12 | 8. 18 | 06:00~24:00 | 야영가능 | "가"급 |
| 일반 (11) | 중 산 | 7. 12 | 8. 18 | 06:00~22:00 | 야영가능 | "나"급 |
| | 적은후진 | 7. 12 | 8. 18 | 06:00~22:00 | 야영가능 | "나"급 |
| | 한재밀 | 7. 12 | 8. 18 | 06:00~22:00 | 야영가능 | "나"급 |
| | 상맹방 | 7. 12 | 8. 18 | 06:00~22:00 | 야영가능 | "나"급 |
| | 하맹방 | 7. 12 | 8. 18 | 06:00~22:00 | 야영가능 | "나"급 |
| | 덕 산 | 7. 12 | 8. 18 | 06:00~22:00 | 야영가능 | "나"급 |
| | | | | | | |
| | 용 화 | 7. 12 | 8. 18 | 06:00~22:00 | 야영가능 | "나"급 |
| | 장 호 | 7. 12 | 8. 18 | 06:00~22:00 | 야영가능 | "나"급 |
| | 원 평 | 7. 12 | 8. 18 | 06:00~22:00 | 야영가능 | "나"급 |
| | 큰 앞 | 7. 12 | 8. 18 | 06:00~22:00 | 야영가능 | "나"급 |
| 임 원 | 7. 12 | 8. 18 | 06:00~22:00 | 야영가능 | "나"급 | |
| 마을 (간이) (2) | 오 른 | 7. 12 | 8. 18 | 06:00~20:00 | 야영불가 | "다"급 |
| | 부 남 | 7. 12 | 8. 18 | 06:00~20:00 | 야영불가 | "다"급 |

* 수영가능 시간 : 06:00 - 20:00

삼척시 공고 제2014-414호

「삼척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허가요건 등 개정 또는 신설(안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완화 : 경사도 비도시지역은 25도 미만
- 토지분할제한면적, 물건적치 등 허가요건 구체적으로 명시

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다.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안 제32조, 별표 7~별표11, 별표 14, 별표 20)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명기

- 라.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6조의2 ~66조의3)
 - 25명 이내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중 삼척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
- 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 개정(안 70조의2)
 - 회의개최 후 6개월 → 회의개최 후 30일
- 바. 「건축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34조~제36조, 제42조, 제47조~제49조 및 별표 12, 13, 16, 17, 19, 21, 23, 24)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사. 위임 규제중 불합리한 규제개혁 발굴·정비로 시민 불편사항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도시디자인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우편번호:245-701
 전 화 : 033-570-3876 FAX : 033-570-3182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위치변경”을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영 제45조제3항”을 “영 제4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영 제39조제3항”을 “영 제39조의3”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은 지상에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가 필요한 지역

제18조제2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제18조제3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다음 1)에서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제3호다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 2)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대지
-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제19조제4호 중 “조경·재해예방”을 “조경·재해예방 및 위해방지”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55조제1항의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며, 도시지역 20도 미만 및 비도시지역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 도시지역 20도 이상 및 비도시지역 25도 이상으로 공공·공익목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생태 현황도(비오름 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및 경사도 산출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22조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를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로, “하수도를”을 “하수도를 신청인이”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2호라목(1)에 따라”를 “제2호라목(1)(가)에 따른”으로,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5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제2호 중 “시통로”를 “시각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수립 예정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물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농어촌도로(포장된 2차선을 말한다)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하천(「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 및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8. 야적장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관광지나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이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
- 9. 적치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비산, 먼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울타리 및 비산먼지 방지망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환경오염발생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농지법」이 규정하는 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산지관리법」이 규정하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2.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영 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 3. 자연녹지지역에서 별표 17의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거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별표 20의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 제외) 건축할 것

나. 해당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마목 또는 제2항의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제29조제4호 중 “20도”를 “20도(비도시지역에서는 25도)”로 한다.

제2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 있는”을 “수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 있는”

을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 있는”을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수 있는”을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수 있는”을 “수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수 있는”을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수 있는”을 “수 없는”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20의2호 및 별표 27의2호”를 “별표 20 제2호다목 및 별표 27 제2호”로, “있는 지역은 별표 25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를 “있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로 한다.

제34조제2호 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골프연습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제1호 중 “철탑이 없는”을 “철탑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를 “자원순환 관련”으로 한다.

제37조 중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을 “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돌의자”를 “의자”로 한다.

제47조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한다)”로 한다.

제48조제11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한다)”로 한다.

제54조제7호 중 “제1항”을 “제53조제1항”으로,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를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제5항 중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를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59조제4호 중 “제2조제5호 다목”을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문”을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조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항에 대한 자문”을 “자문 사항에 대한 조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위원장”을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5조의3(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영 제55조제5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를 “영 제57조 및 영 제58조”로 한다.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삼척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삼척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제6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삼척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삼척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6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0조의2 본문 중 “6개월”을 “30일”로 한다.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6부터 별표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19부터 별표 2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가 기준 |
|--------------|---|
| 가. 공통분야 |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나. 도시관리 계획 |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다. 도시계획사업 |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 마. 기반시설 |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라 이 조례로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할 것 |
| 바. 그 밖의 사항 |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에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임박의 별책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가기준 |
|-----------------------|---|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에 따를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토지의 형질변경 |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흠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결면에 대해서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할 것 |
| 다. 토석채취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쳐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토지분할 |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관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 검토분야 | 허가기준 |
|-----------------|--|
| |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요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해당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은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 마.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해당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해당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

※ 비고 : 골프장스키장기존 사찰·풍력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개발행위 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영 제55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2013.02.28.>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현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한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호 관련)

1.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협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한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해당하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5호 관련)

1.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2013.02.28.>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2013.02.28.>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하. 별표 4 하목의 공장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2013.02.28.>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개정 2014.04.04.>
-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3.02.28, 2014.04.04.>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개정 2013.02.28.>
-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13.02.28.>
-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6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1호하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7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1호하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8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1호하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9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1호하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0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1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물관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2013.02.28.>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2013.02.28.>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2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린주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2013.02.28.>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2013.02.28.>
-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2013.02.28.>
-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6]

생산농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5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개정 2014.04.04.>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2013.02.28.>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 이하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13.02.28.>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2013.02.28.>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2013.02.28.>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무 및 아묵에 해당하는 것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2013.02.28.>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6호 관련)

1.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

- 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1호카목 가) 내지 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4.04.04.>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과 라목<2013.02.28.>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생산물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8호 관련)

-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2013.02.28.>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개정 2014.04.04.>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4.04.04.>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2013.02.28.>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2013.02.28.>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무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2013.02.28.>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2013.02.28.>

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9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5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 25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5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1호카목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천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0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13.02.28.>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무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2013.02.28.>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2013.02.28.>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2013.02.28.>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2013.02.28.>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2013.02.28.>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1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4.04.04.>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2호 관련)

1. 시행령 및 우의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립주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삭제 2014.04.04.>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2013.02.28.>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카목 가) 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2013.02.28.>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2013.02.28.>
-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4]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3호 관련)

1.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5에서 정하는 지역 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2013.02.28.>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2013.02.28.>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2013.02.28.>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19 거목 가) 내지 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나)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 공장

-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14호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2013.02.28.>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2013.02.28.>
 -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5]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3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겹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6]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제28조제5항 관련)

| 용도지역 | 건축물의 용도 |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m) | 기존 개발행위 면적(㎡) | 기반시설 등 기타 |
|---------|---------------|---------------------|---------------|------------------|
| 자연 녹지지역 | 제32조에 적합한 건축물 | 30 | 15,000 | -진입도로: 너비 8미터 이상 |
| 계획 관리지역 | 제32조에 적합한 건축물 | 30 | 35,000 | -진입도로: 너비 8미터 이상 |
| 농림지역 | 제32조에 적합한 건축물 | 30 | 35,000 | -진입도로: 너비 8미터 이상 |

비고

- 허용 용도의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는 도로의 너비를 제외한다.
- 서로 다른 용도지역일 경우에는 기존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더 큰 면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는 삼척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 |
| 1. ~ 9. (생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0.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 10. ----- -----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
| 11. 영 제4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 11. 영 제45조제4항 ----- |
|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12. -----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 |
| 13. (생략) | 13. (현행과 같음) |
|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3----- ----- ----- |
|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한다. |

| 현행 | 개정안 |
|---|--|
| <p>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3. (생략)</p> <p>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 <p>1. -----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 ----- ----- 하수도를 신청인이 -----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p> <p>2.·3. (현행과 같음)</p> <p>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 제2호라목(1)(가)에 따른 ----- ----- 다음 각 호의 면적 -----</p> <p>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p> <p>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p> <p>② 영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p> <p>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계분할이 아닐 것.</p> |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동로 차폐, 미판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p> <p>3.·4. (생략)</p> <p>5. 공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수립 예정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p> <p><신설></p> | <p>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걸쳐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p> <p>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p> <p>1. (현행과 같음)</p> <p>2. ----- 시각적 -----</p> <p>3.·4. (현행과 같음)</p> <p>5. 물건-----</p> <p>6. 농어촌도로(포장된 2차선을 말한다)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7. 하천(「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 및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 <신설> | 8. 야적장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관공지나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이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 |
| <신설> | 9. 적치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비산, 먼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울타리 및 비산먼지 방지막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환경오염발생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 ----- ----- -----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4. 「농지법」이 규정하는 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신설> | 5. 「산지관리법」이 규정하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 -----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신설> |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판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조제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 현행 | 개정안 |
|----|---|
| | <p>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p> <p>2.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p> <p>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p> <p>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p> <p>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영 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단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를 한 공장</p> <p>3. 자연녹지지역에서 별표 17의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거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별표 20의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p><신설></p> <p>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가. 해당용도(집단화 유도용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 제외) 건축할 것</p> <p>나. 해당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p> <p>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것</p> <p>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마목 또는 제2항의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p> <p>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타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p> <p>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 ----- -----</p> |

| 현행 | 개정안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u><신설></u> | 4. ----- 20도(비도시지역에서는 25도) --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13조제1항-----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 6. ----- 수 없는 |
|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 7. ----- 수 없는 |
|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 8. ----- 수 없는 |
|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 9. ----- 수 없는 |
|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 10. ----- 수 없는 |
| 11.·12. (생략) | 11.·12. (현행과 같음) |
|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 13. ----- 수 없는 |
| 14. ~ 18. (생략) | 14. ~ 18. (현행과 같음) |
|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 19. ----- 수 없는 |
| 20. ~ 23. (생략) | 20. ~ 23. (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
| 제33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의 2호 및 별표 27의2호 단서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5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 제33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0 제2호다목 및 별표 27 제2호 ----- ----- 없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 |
|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 13. (생략) |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 1. (현행과 같음) 2. ----- ----- 골프연습장 ----- ----- 3. ~ 13. (현행과 같음) |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14.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15. (생략) | 15. (현행과 같음) |
| 제35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략) | 제35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 1. ~ 13. (현행과 같음) |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14.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15. (생략) | 15. (현행과 같음) |
|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타이 없는 골프연습장 |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 1. ----- ----- 철타이 있는 ----- |

| 현행 | 개정안 |
|---|--|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11. -----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한다) |
| 12. (생략) | 12. (현행과 같음) |
|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 7. ----- 제53조제1항 ----- 이하로 한다. |
| <신설> | 8.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생략) |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 ⑤ ----- 이하로 한다. |
|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4. ----- 제2조제8호라목 ----- |
| <신설> | 5.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 x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생략)</p> <p>제62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p> <p>2. (생략)</p> <p>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p> <p>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여한 사항에 대한 자문</p> <p>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생략)</p> <p>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p> <p>3. (생략)</p> | <p>② (현행과 같음)</p> <p>제62조(기능) -----</p> <p>1. -----</p> <p>-----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p> <p>2. (현행과 같음)</p> <p>3. -----</p> <p>-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조언</p> <p>4. -----</p> <p>----- 자문 사항에 대한 조언</p> <p>제65조(회의운영) ① ----- 시장 또는 위원장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5조의3(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6조(분과위원회) ①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열</p> <p>제57조 및 영 제58조 -----</p> <p>3.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 ⑥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70조의2(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단,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66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삼척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p> <p>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p> <p>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삼척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3. 제6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삼척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삼척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p> <p>제66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제70조의2(회의록의 공개) -----</p> <p>----- 30일 -----</p> |

(별표 개정 주요내용-신구조문대비표)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별표 1의 제1호 가(3)의 후단 |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별표 2의 제1호 마목 중단 |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한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
| 별표 3의 제1호 마목 중단 |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한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
| 별표 4 | 개정사항 없음 | |
| 별표 5 | 개정사항 없음 | |
| 별표 6 | 역화가스관대소 | 역화가스 원점소·관리소 |
| 별표 7~별표 11 : 전면개정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2 제1호 거목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별표 13 제1호 마목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별표 14 : 전면개정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5 | 개정사항 없음 | |
| 별표 16 제1호 아목 중단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연구소로 한정한다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연구소로 한정한다 |
| 동 마목 | 제18호의 광고시설 | 제18호가목의 광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만 해당한다) |
| 동 바목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별표 17 제1호 거목 가) 후단 | 별표 16 카목 | 별표 16 제1호 카목 |
| 동 바목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별표 18 | 개정사항 없음 | |
| 별표 19 제1호 바목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별표 20 : 전면개정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21 제1호 바목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별표 22 제1호 나목 | 아목 △ 및 | 아목 및 |
| 별표 23 제1호 리목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별표 24 제1호 후단 | 별표 24에서 | 별표 25에서 |
| 동 바목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별표 25 : 전면개정 |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26 : 신설 | | |

삼척시 공고 제2014-418호

「삼척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25일

삼척시장

삼척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합운동장 연습사용 기본료 현실화 및 축구장 야간 조명을 설치함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야간 운동장 사용 신청이 예상되어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적정 사용료 징구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의 체육시설사용료 조례 개정안의 운동장연습사용 기본료 잔디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평일 및 휴일로 구분하고 금액을 인상하며,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따라 야간사용시 전기요금 적용금액 신설
- 별표 3의 경기장 초과 사용료 요금 비율인상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
| 1. "경기장"이라 함은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1. ----- 이란 ----- ----- 이란 ----- |
|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 2. ----- 이란 ----- ----- |
|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일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3. ----- 관 ----- ----- 관 ----- |
|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경기장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 관 ----- ----- 관 ----- |
|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5. ----- 관 ----- ----- 관 ----- |
|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6. ----- 관 ----- ----- 관 ----- |
|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30인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 7. ----- 이란 ----- ----- 30명 ----- |
|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 8. ----- 이란 ----- ----- |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

| 현행 | 개정안 |
|---|---|
|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기타 |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경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소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을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 제5조(시설의 개방) ① ----- ----- 없으면 ----- ----- |
|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 -----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3. 그 밖에 ----- -----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제6조(개방제한) ----- ----- 발생하였을 -----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4. 그 밖에 ----- ----- |
|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4. 그 밖에 ----- ----- |
|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각 호 어느 하나 ----- -----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 5. 그 밖에 ----- ----- |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6. <u>그 밖에</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 제15조(입장권) ① ----- ----- ----- 각 호 어느 하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1] (단위:원) | [별표 1] (단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용목적</th> <th>구분</th> <th>기준</th> <th>요액(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4. 운동장 연습사용 요기분류</td> <td rowspan="2">트랙</td> <td>개인</td> <td>2시간당</td> <td>500</td> </tr> <tr> <td>단체</td> <td>2시간당</td> <td>10,000</td> </tr> <tr> <td rowspan="2">견디</td> <td>단체</td> <td>2시간당</td> <td>10,000</td> </tr> <tr> <td>단체</td> <td>2시간당</td> <td>10,000</td> </tr> </tbody> </table> | 사용목적 | 구분 | 기준 | 요액(원) | 비고 | 4. 운동장 연습사용 요기분류 | 트랙 | 개인 | 2시간당 | 500 | 단체 | 2시간당 | 10,000 | 견디 | 단체 | 2시간당 | 10,000 | 단체 | 2시간당 | 10,000 |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용목적</th> <th>구분</th> <th>기준</th> <th>요액(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4. 운동장 연습사용 요기분류</td> <td rowspan="2">트랙</td> <td>개인</td> <td>2시간당</td> <td>500</td> <td rowspan="4">이간사설시 장기요금을 관하여금액을 [시간당, 10,000원]</td> </tr> <tr> <td>단체</td> <td>2시간당</td> <td>10,000</td> </tr> <tr> <td rowspan="2">견디</td> <td>별 의</td> <td>2시간당</td> <td>30,000</td> </tr> <tr> <td>휴 일</td> <td>2시간당</td> <td>40,000</td> </tr> </tbody> </table> | 사용목적 | 구분 | 기준 | 요액(원) | 비고 | 4. 운동장 연습사용 요기분류 | 트랙 | 개인 | 2시간당 | 500 | 이간사설시 장기요금을 관하여금액을 [시간당, 10,000원] | 단체 | 2시간당 | 10,000 | 견디 | 별 의 | 2시간당 | 30,000 | 휴 일 | 2시간당 | 40,000 |
| 사용목적 | 구분 | 기준 | 요액(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운동장 연습사용 요기분류 | 트랙 | 개인 | 2시간당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체 | 2시간당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견디 | 단체 | 2시간당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체 | 2시간당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목적 | 구분 | 기준 | 요액(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운동장 연습사용 요기분류 | 트랙 | 개인 | 2시간당 | 500 | 이간사설시 장기요금을 관하여금액을 [시간당, 1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체 | 2시간당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견디 | 별 의 | 2시간당 | 3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 일 | 2시간당 | 4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3] 체육시설사용료(제12조제1항관련) (단위:원) | [별표 3] 체육시설사용료(제12조제1항관련) (단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초과사용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체육경기 및 체육 경기 이외의 경기</td> <td>매시간당 사용료의10%</td> <td></td> </tr> </tbody> </table> | 구분 | 초과사용료 | 비고 | 체육경기 및 체육 경기 이외의 경기 | 매시간당 사용료의10%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초과사용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체육경기 및 체육 경기 이외의 경기</td> <td>매시간당 사용료의20%</td> <td></td> </tr> </tbody> </table> | 구분 | 초과사용료 | 비고 | 체육경기 및 체육 경기 이외의 경기 | 매시간당 사용료의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초과사용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경기 및 체육 경기 이외의 경기 | 매시간당 사용료의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초과사용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경기 및 체육 경기 이외의 경기 | 매시간당 사용료의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년 0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 (참조 문화공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45-701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문화공보실
- 전화 : (033) 570-3725
- FAX : (033) 570-3132

4. 참고사항

○ 삼척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을 “각 호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 1”을 “각 호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 중

4. 운동장 연습사용료기본료 의 잔디 및 비고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용목적 | 구분 | 기준 | 요액(원) | 비고 | |
|-----------------------|----|----------|-------|--------|---------------------------------------|
| 4.운동장 연습사용 료기본료 | 트랙 | 개인 | 2시간당 | 500 | 야간사용시 전기요금은 관리요금액용 (시간당10,000원) |
| | | 단체 팀당 | 2시간당 | 10,000 | |
| | 잔디 | 평 일 | 2시간당 | 30,000 | |
| | | 휴 일 | 2시간당 | 40,000 | |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시설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 구분 | 초과사용료 | 비고 |
|-----------------------|-----------------|----|
|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 이외의 경기 | 매시간당 사용료의20%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공고 제 2014 - 423호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

삼척시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관리휴양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4. 7. 1.

삼척시장

- 지정내용 : 별 칙
- 지정목적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산간계곡 및 하천 등을 관리함으로써 하절기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양 장소를 제공하고 당해 휴양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자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관광정책과 관광기획(☎570-384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내용

| 마을관리휴양지명 | 위 치 | 구 역 | 면 적(㎡) | 최지일 | 초정자 | 지 정 간 | 비고 |
|------------|---------------------------|---|----------------|-----------|-----|---------------------------|--------------|
| | | | 지정(변경) | | | | |
| 계 | | | (6개소) 1.67㎡ | | | | |
| 월 천 유원지 | 원덕읍 월천리 577번지일원 | 유원지 인접하천 | 0.18 | '90.05.10 | | '14.07.01. ~ 08.31. | |
| 재 동 유원지 | 근덕면 교가리 163-1번지일원 | 유원지 인접하천 | 0.018 | '96.06.12 | | '14.07.01. ~ 08.31. | |
| 내 평 계 곡 | 근덕면 동막리 1780-1번지일 원 | 매표소⇔대평상보 | 0.212 | '89.07.29 | | '14.07.01. ~ 08.31. | |
| 중 봉 계 곡 | 하장면 중봉리 443번지일원 | 매표소⇔ (구)중봉초교 중봉교 부근 갈천리676번지일원 | 0.31 | '96.06.12 | | (휴장) | 해당마을 농림부족 |
| 덕 풍 계 곡 | 가곡면 풍곡리 803번지 일원 | 풍곡리461번지도로 ⇔ 풍곡68번지일원 | 0.65 | '90.05.10 | | '14.07.01. ~ 08.31. | |
| 동 활 계 곡 | 가곡면 동활리 296번지일원 | 하춘전입구⇔ 동활 1교 | 0.30 | '90.05.10 | | (휴장) | 휴양지 환경변화 |